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9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송옥주 · 홍기원 · 이원택
소병훈 · 위성곤 · 박지원
전종덕 · 박해철 · 이수진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의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또한 현행 「선원법」은 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험수역 항행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핵심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지정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여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원의 징계사유로 신설함으로써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좁은 수로를”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u>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u> 3. · 4. (생 략) ② (생 략)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 <u>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을</u> -----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해원의 징계) ① 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2조(해원의 징계)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 <u>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